

구성원 참여 · 소통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2.01.20., 개정 2024.04.29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구성원 참여·소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 1. 구성원 참여·소통에 대한 운영과 계획에 관한 사항
 2. 참여·소통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3. 기타 참여·소통에 관한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교무처장, 총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- 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, 각 구성단위의 위원회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교원 - 4명(당연직 포함)
 2. 직원 - 2명
 3. 조교 - 1명
 4. 학생 - 2명
 5.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③ 학생위원은 재학 중인 자 중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<개정 2024.04.29.>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기획팀 직원으로 한다.

제4조 (임기)

-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(학년도 기준)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② 학생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관련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 시킬 수 있다.

제7조 (회의록의 작성)

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부 칙(2022.01.2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4.29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